

第55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 會議錄

第8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2月 9日(土) 10時 02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1996年度 豫算(案)(繼續)

審査된 案件

1. 1996年度 豫算(案)(繼續)(財務局)(鍾路區廳長 提出)1面

(10時 02分 開議)

○委員長 玄壽漢 地方自治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在籍委員 11명 중 出席委員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鍾路區議會 定期會 제8차 市民行政委員會 開議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委員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관계 공무원 나와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96年度 豫算(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96年度 豫算(案)(鍾路區廳長 提出)

(10時 03分)

○委員長 玄壽漢 議事日程 제1항 '96年度 豫算(案)을 상정하겠습니다. 財務局長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구정업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현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6년도 저희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은 세입징수와 회계지출업무, 그리고 지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기능이 비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어 각 실·과·동을 지원해

주는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내년도 재무행정비 세출예산 총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편성예산액은 73억1,713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세정관리에 4억7,085만5,000원, 회계관리에 58억8,253만5,000원, 재산관리에 6억2,260만2,000원, 지적관리에 3억4,11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재무행정비 예산 46억1,785만원에 비하면 26억9,928만3,000원(58.5%)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민회관 건립 신축부지 매입비 30억원, 부암동, 종로3·4가동, 삼청동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비 11억원, 청운동, 교남동, 가회동, 이화동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비 10억8,000만원 등 토지매입비 51억8,000만원과 지적도 정비사업 및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전산화 용역비로 2억3,000만원 그리고 각 실·과에서 구입 요청한 정수물품비 7억1,000만원 등 포괄계상분 총 58억9,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재무국 소요예산은 14억3,200만원으로 내년도 구 전체 예산 988억8,000만원의 1.4%에 불과합니다.

첫째로 세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정관리에 계상된 총예산은 4억7,085만5,000원으로 기준경비로 여비 1,00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 1억3,126만6,000원은 부과, 세무관리과 시책업무 추진비이며, 경상적 경비로 계상된 일반

운영비 2억6,238만9,000원은 각종 세무관련서식, 대장, 인쇄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7,796만1,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642만8,000원이고, 구 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 세무관리과 및 부과과 직원급량비 2,100만원, 공부정리 및 계수 보조 일용인부임 5,400만원이며 또 세무담당직원의 여비 3,360만원과 보상금 2,760만원, 사무자동화에 따른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회계관리 예산에 계상된 58억8,253만5,000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실과에서 업무 전산화에 따른 정수물품인 전산장비구입 및 복사기, 에어컨디셔너 등 자산취득비로 7억553만5,000원과 또한 시설비 등으로 종로구 구민회관 신축부지 매입비 30억원과 부암동 어린이집 신축 외 6건 토지매입비 21억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재산관리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 5,577만6,000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20만원과 재무국 전직원 100여명에 대한 기본급식비 및 여비 등의 관서당경비로 7,515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는 사무용품비, 인쇄비, 물품구입비, 공고료, 보존등기수수료 등으로 9,871만원, 구유건물화재보험료 1,400만원, 계약심사위원 등 운영수당 1,055만원, 국유재산실태조사 급량비 2,7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230만원, 일시고용인부임 4,32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044만원, 결산검사위원보상금 897만6,000원이고 시설비로는 청운노인정 잠종재산화에 따른 구유재산관리 수선비 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95 시비 및 국비보조금 집행후 잔액 반환금으로 2억원으로 총 6억2,2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각종 위원회 운영비 513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 인쇄비, 우편료, 운영수당 등 6,470만5,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96만원과 연구개발비로 지적도정비사업 2억931만6,000원은 내무부 및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 지시되어 우리구 중기계획에 의거 2000년까지 완성될 계획으로 '96년도 118매분이고,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전산화 시행에 따른 1,578만원은 수기작업의 불편, 오기 등을 없애고 민원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특성자료 발취 및 입력용역비입니다. 따라서 지적관리예산은 총 3억4,114만1,000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저희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구정수행을 위한 지원예산이 대부분이며 구정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내용이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별심의 과정에서 소관 실·과장이 자세히 보충 설명드리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玄壽漢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로구의회의 회의규칙 제55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위원 있음)

네. 鄭泰淳委員! 질의하세요.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예산서 383P. 지금 종로구는 재정이 빈약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국비보조금 8,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2,000만원 토달 2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國家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로부터 특수 목적의 국비·시비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비·시비의 지원보조금은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해당 목적은 소수업무의 활동 등 위생관리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남은 돈은 다 우리 구비예산처럼 이월돼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반환되어야 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무엇 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해당 소관 국에서 별도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나중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鄭泰淳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吳錦南委員! 질의하세요.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347P. 맨 윗쪽에 보시면 국내여비 이건 없었던 예산이지요?

○財務局長 金誠泰 국내여비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企劃豫算課에 포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내용이 이번에 각 국·실과 특성에 따라서 여비를 별도 책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책정이 되도록 내무부지침이 '9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 재무국에서 총괄적으로 국내여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吳錦南委員 국별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있지요? 거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3,9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7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합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특수업무활동비는 3,9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된 8,73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서 민선시대를 맞이한 이후에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무관리 강화 등 많은 특수행정활동의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 점은 과거에 비해서 직원들의 수고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반증이고 또한 이것은 통일된 내무부 지침인 것으로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1인당 8만원입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네. 그렇습니다. 세무직의 경우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351P. 지방세 관련 법령집은 2만원 해가지고 44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357P. 거기도 법령집이라고 해가지고 인원수도 27명이나와 있는데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리고 도서구입비 해서 가운데 법자만 빠졌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351쪽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부과과 소관이고 357쪽에 있는 부분은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

○吳錦南委員 다 똑같다 이거지요?

○財務局長 金誠泰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沈載得委員! 질의하세요.

○沈載得委員 沈載得委員입니다. 吳錦南委員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100% 이상 인상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추가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인상이 돼서 세수입이 배 이상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서린호텔 부도건 말이예요? 그게 지금 한 10억 이상이 미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건 한푼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걸 확실히, 상세히 말씀 좀 해보세요. 지난번 감사 때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몇 년도에 부도가 났고 10억 이상되는 세가 몇 년도서부터 계속 밀린 건가 말이지요.

○稅務管理課長 鄭泰武 서린호텔은 '90년도부터 체납된 겁니다. 그래서 '91년 그때 당시 체납된 것을 안배해서 2월 26일 법원에서 경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체납시설청구비를 '93년도 교부 청구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3,700만원밖에 못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법인세 뭐 그런 게 날라오니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안할 수가 없어 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조정한 다음에 부과가 돼서 10억이 되었습니다.

○沈載得委員 확실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稅務管理課長 鄭泰武 10억 6,000만원입니다. 이미 이걸 경매가 끝나 가지고 우리 구에서 받을 게 없습니다.

○沈載得委員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財務局長 金誠泰 일단 서린호텔이 경락이 끝나서 경락된 재산 가지고 재산 분배를 했는데 저희는 10억 6,000만원 중에 3,700만원 밖에 못받았다 이거예요.

○沈載得委員 그러면 1년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稅務管理課長 鄭泰武 '90년도 1건에 1,500만원 나와서 경락된 후에 '92년도, '93년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입이잖아요. 양도소득세, 법인세, 자동차세 등 경락 후에 조정이 된 겁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서로 넘어온 겁니다.

○沈載得委員 내가 볼 때는 세수증대 하기 위해서 추진비를 많이 올려줬다고 그랬는데 추진비가 적어서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10억이나 되는 돈을……

○稅務管理課長 鄭泰武 숫자상으로 10억이지만 경락 후에 조정된 숫자고 경락 전 숫자는 얼마 안됩니다. 주민세가 많아 가지고 10억이 넘습니다.

○沈載得委員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받을 수가 없다는데 할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朴文培委員! 질의하세요.

○朴文培委員 朴文培委員입니다. 회계관리과 363P. 총무과에 50만원씩 해서 TV 2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TV를 설치하는 겁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96년도에 저희 총무과에서 TV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1대는 직장 외국어 강좌 개설을 위해서 개설용으로 필요한 것이고 1대는……

○朴文培委員 2대가 지금이 되는데 몇인치짜리, 얼마짜리인데 2대를 50만원씩 지급합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규격은 지금 정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TV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朴文培委員 100만원 달라면 100만원 주고 200만원 달라면 200만원 주고 그럴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그게 아니라 50만원 범위 내에서 2대를 산다 이겁니다. 1대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산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50만원을 정했는데 TV값이 떨어져서 싸지면 규격이 커지고 예를 들면 21인치 사려고 예상하다가 TV가 떨어지면 23인치를 사는거지, 이건 가격을 정한거지 규격을 정한 게 아닙니다.

○朴文培委員 규격이, 가격이 맞아야 예를 들어서 지출 부분이 성립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운상가도 25인치 TV도 한 45만원인데 이건 너무 비싸고 큰 것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 해서 확인해서 설치경비를 지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구한 사항이니까 지출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확인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맥락이고 또 한 가지는 에어컨디셔너라고 했는데 영어지요? 그렇지요? 그 에어컨디셔너가 됩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에어컨디셔너입니다.

○朴文培委員 영어로 써 놓든지 에어컨으로 써 놓든지 얼른 알아 보게끔 써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總務課가 總務1과, 2과, 3과, 4과, 부과과 이렇게 해서 에어컨을 놓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 천차만별입니까? 같은 2개 설치할 때 450만원을 두대 놓는 곳도 있고, 370만원짜리 두대 놓은 곳도 있고 300만원짜리 2대 놓는 곳도 있고, 300만원짜리 한대 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규격이 전부 다른 겁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朴文培委員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TV의 경우는 가격으로 결정한 사안인데 대개 저희 구청에서는 25인치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委員님이 세운상가에서 싸게 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달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덩핑물품을 산다든지 그런 것은 실제 예산집행법상……

○朴文培委員 덩핑물건은 아니고 조달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방화시대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꼭 구입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만약에 그런 법규가 있다면 비싼 조달구매를 제동을 걸어야만이 지방자치시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바람직한 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인치 같으면 절반값으로 2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더 검토를 해서 지출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에어컨에 대한 가격이 천차만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65페이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계속해서 에어컨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님이 질의할 때 지금 묻고 계시는 예산은 총체적으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수물품 책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수물품 책정에 관련된 사항은 총괄적으로 財務課에 예산이 계산되어 있지만 예산집행하는 부서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파별로 다릅니다. 總務課의 경우는 總務課가 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1규격의 경우는 시발티 3대인데 시발티 3대가 최고 대형입니다. 강당 에어컨 2대, 기획상황실 냉·난방 1대가 되겠습니다. 강당의 에어컨 2대는 '83년 6월에 구입한 것인데……

○朴文培委員 질문을 들어보시고 여기 표기상으로는 누구든지 읽게 되면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에어컨인지 아니면 용량이 다른 에어컨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규격이 천차만별로 적혀 있기 때문에 2대를 450만원에 사는 수도 있고 한대를 300만원에 사는 수도 있고 해서 들쭉날쭉한 에어컨의 규모라고 할까 배기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물건 같으면 뭔가 기재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 용량이 다르다 하면 다른 데로 넘어 갑시다. 바쁘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단가별로 용량이 다 다른 것입니다.

○**朴文培委員** 용량이 다른 사유가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알른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알겠습니다.

○**朴文培委員** 367페이지. 냉·난방기 겸용 해서 여기도 450만원짜리 한대, 250만원짜리 한대 또 동사무소에는 299만원짜리 9대가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도 무슨 냉·난방기 겸용한 기구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량별로 중전에 얘기했던 에어컨에 관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7쪽을 봐 주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373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기본업무추진비가 $5,000원 \times 7일 \times 107명 \times 12월$ 해서 4,494만원 기재되어 있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379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5,000원 \times 3일 \times 18명 \times 12월$ 해서 324만원 했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라는 것이 글자가 똑같지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373페이지하고 379페이지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財務局長 金誠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朴文培委員** 답변이 되겠습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계속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367페이지의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냉·난방기의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규격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동사무소 회의실에 따라서 규격이 큰 것은 용량이 큰 것, 규격이 작은 것은 용량이 작은 것을 구매해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沈載得委員** 議席에서—總務課 냉방기 용량에 대해서 불러주십시오.)

○**朴文培委員** 용량을 별도로 해서 얼마짜리 냐는데 얼마나 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전체 자료를 저희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로5, 6가동을 비롯해서 삼청동, 사직동, 청운동, 부암동 거의 전체의 에어컨 시설과 냉방기, 온풍난방기 겸용기가……

(○**沈載得委員** 議席에서—평수는 몇 평이고 가격은 얼마이고 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財務局長 金誠泰**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朴文培委員** 실·과가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그렇지 않습니다.

○**朴文培委員** 큰 사무실이 있고 작은 사무실이 있고 다 다릅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크기가 다 다릅니다.

○**朴文培委員** 용량을 표시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73페이지하고 379페이지하고 똑같은 기본업무추진여비인데 풀이해서 설명해줘야 알겠습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들어 있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財務局 총 인원에 대한 관서당경비로 책정된 것이고 뒤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는 財務課 것만 들어 있는 것입니다. 각각 관서당경비와 국내여비로 계산하게 한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朴文培委員** 글씨 자체가 중복이 돼 있는데 중복이 안되어 있어요? 글씨가 똑같은데 기본업무추진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똑 같은데 중복이 안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답한 것으로치고 377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委員長 玄壽漢** 여러 위원님께 주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연거퍼 하시면 답을 못합니다. 공무원께서도 1문1답식으로 꼭 해주시고 이 점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으시고 질의하십시오.

○**朴文培委員** 377페이지 국유재산실태조사 보세요. 그 다음에 381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글자가 똑같지요?

○**財務局長 金誠泰** 네. 그렇습니다.

○**朴文培委員** 뭐가 다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앞에 말씀한 과목은 금량비이고 그 다음에 들어 있는 것은 국유재산실태조사를 위한 여비입니다.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朴文培委員** 예산관리과 소관이라도 다 다릅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네. 그렇습니다.

○**朴文培委員** 금량비의 국유재산실태조사 하고

그냥 국유재산실태조사 하고 다릅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하나는 금량비이고 하나는 여비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출장나가서 쓰는 밥값이고 하나는 출장나가는 여비고 그렇습니다.

○**沈載得委員** 밥값하고 출장비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지?

○**財務局長 金誠泰** 예산편성 지침의 기본범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文培委員** 금량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풀이해서 답을 주십시오. 이것도 자료로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위원 있음)

네. **洪起瑞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朴文培委員**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복사기를 보면 에어컨과 똑같은 맥락인데 무조건 대당 300만원씩 적어 놔는데 복사기에도 명칭이 있지 않겠어요? 300만원씩 주고 산다는 것인지 기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기종과 용량을 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동일 목적의 물건인 경우는 물건을 용도에 필요한 것만 정해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저희가 선호하는 기기를 결정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다가 무슨 기종 얼마짜리를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상정하지는 않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물며 조그마한 개인회사에서 물품 하나를 사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NT402를 산다든지 403을 산다든지 하는 건데 명색이 지방관공서에서 하면서 돈을 먼저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기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조달청 가격으로 산다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의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복사기의 경우는 지금 국내에 복사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대형으

로 꼽히는 회사가 신도리코, 제록스, 롯데, 금성사 등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성사는 몇 대다 이렇게 예산편성은 못하는 겁니다.

○**朴文培委員**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복사기 NT402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280만원이 되고 NT30은 부가세 포함하면 308만원이 돼요. NT40은 363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기종에 맞는 예산편성이 안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물품을 사더라도 예산편성에 맞는 물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300만원 해놓으면 280만원짜리 사겠다는 얘기에요. 308만원짜리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안맞지 않습니까? 어떤 정수물품의 뭐가 나와야 가격이 적당한가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놓으면 예산 편성해서 올리나 마나 똑같은 것이지 그럼 올릴 필요없이 사 가지고 다음에 결산서 올릴 때 우리가 얼마주고 샀다 하면 되지.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료수집을 해놔더니 예산편성된 자료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리점에 가서 봐도 여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색이 관공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떤 기종하고도 딱 떨어지는 예산편성이 안되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은 것은 제록스 신도리코에서 통일된 보통 기종이 현재 시중가가 '95년도 단가로 285만원입니다.

○**沈載得委員**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잖아요. 신도리코가 기종이 똑같은 것은 아니니까 용량을 말씀하셔야죠.

○**洪起瑞委員** 됐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복사기하고 에어컨하고 어떤 기종을 사겠다는 명세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네. 알겠습니다.

○**洪起瑞委員** 369페이지를 보면 청운동노인정해서 3억이 잡혀 있는데 현재 청운동에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청운동노인정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노인정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현재는 청운동에 노인정이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381쪽을 보면 국유재산관리수송비로 해서 5,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됩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에 청운동에 소재하는 노인정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독서실하고 같이 있었던 노인정이 기능을 상실했다고 市民局에서 결정을 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결정이 돼서 잡종재산으로 구분이 됐는데 그 잡종재산을 수익재산으로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현장 상태가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루가 꺼졌다는지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있을 정도로 금이 가 있다든지 상당한 보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일반 임대하기 전에 그 건물을 일제 수리한 후에 임대하기 위한 수리비용입니다.

○**洪起瑞委員** 복지시설인 노인정을 임대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노인정은 용도폐지가 됐고

○**洪起瑞委員** 용도폐지를 해서 임대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대지를 구입해서 노인정을 지으려고 예산이 올라온 게 기존에 있던 노인정을 수리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폐지를 시켜서 번거롭게 임대를 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력낭비요 예산낭비인데 바쁜 시기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물으신 부분은 사실은 財務局長 답변 사항이 아니고 市民局長이 답변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市民局에서 노인정을 관리하는데 노인정으로써의 용도가 필요없다고 결정하는 것은 市民局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있을 때 市民局長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5,500만원에 대해서 이번의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財務局長 金誠泰** 노인정은 이미 저희 구청 내부 절차로써 용도폐지 결정이 됐고 그래서 더이상 노인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財務局 잡종재산으로 넘어왔고 잡종재산으로써 저희가 수십억 나가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쓸 수 없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洪起瑞委員** 市民局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노인정을 5,500만원씩 들어서 수리할 필요가 없고 다시 노인정으로 환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저희가 市民局으로부터 노인정으로 더이상 필요가 없다고 공유재산심의회에 노인정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심의한 사항이고 용도폐지를 결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나 하는 것은 용도폐지를 결정한 市民局 소관사항이고 최종스럽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못되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司空坤** 보충해서 財務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비는 앞으로 노인정으로 다시 환원해서 쓴다 하더라도 수리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마루장이라든지 또 앞의 축대에 금이 가고 침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또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安哲柱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哲柱委員** 安哲柱委員입니다. 이미 財務局長님과 財務課長님께서 청운동노인정 보수비 5,5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복지시설을 임대하기 위해서 노인정을 폐쇄한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된 부분인데 수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셨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노인정의 이용객이 적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5,500만원에 대한 시설비가 필요하다면 그 내역은 어떤 것들입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노인정 수리비 예산은 노인정 1층 마루부분이 상당 부분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마루가 꺼질 위험이 있습니다.

○**安哲柱委員** 됐습니다. 그런 꺼질 상태에서 노인정을 어떻게 노인들이 이용했겠느냐에 대한 것을 되짚어 생각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그 부분은 사실상 노인정 관리를 성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정 운영이 잘 못됐다는 얘기도 사실은 財務局長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委員님들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계약은 財務課에서 하죠? 소관은 總務課 소관이지만 계약

은 財務課에서 하지요?

○財務課長 司空坤 건물임대, 잡종재산이 아니면 토지나 건물의 경우에……

○洪起瑞委員 동청사 신축이나 토지매입만 합니까?

○財務課長 司空坤 네.

○洪起瑞委員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總務課 예산을 계산하고……

○洪起瑞委員 總務課 예산으로 하고 계약은 계약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입찰에 따른 계약은 財務課에서 합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동청사 계약이 단가가 보통 28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 고급주택을 보통 지으면 200만원에서 210만원 주면은 잘 짓습니다.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면 잘 지을 수 있는데 어떤 계약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지만은 280만원 정도 계약을 해서 지으면서도 전부 삼청동처럼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건축비 단가에 대한 내용은 財務局長이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실제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財務局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이나 토목의 경우 각각 건설국에서 적합하게 단가를 맞춘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받아서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委員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저희 財務局 업무 범위를 넘어선 좀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財務局長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별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洪起瑞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종로구청 모든 재산은 재무관이 우리 재무국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 이런 데에서 상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하시는 계약제장 정도는 그런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과다하게 산출이 되어가지고 올라왔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가 1억 이상되는 것은 우리 재무국장이 계약을 하는 실무자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재무국장님 정도 되면 그런 단가 정도는 산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건설관리과나 토목과에서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주먹

구구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이런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시중에 다 돌아다니면서 국장님이 시장조사를 한번 해봐요. 어디에서 건축하는데 가서 주택 짓는 데 가서 평당 얼마짜리냐, 지금 현재 이화동 로타리에 가보면 주차장 바로 옆에 옛날 제일주차장에서 지금 건물이 165만원에 짓는 거예요. 빌딩이. 115만원씩을 더 주고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도 부실공사가 나가지고 몇 개월이 안되었는데도 삼청동사무소에 가면 균열이 되고 텍스가 썩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하고 업자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업자들이 선정되는 것을 보면 종로 관내 사람이 안돼요. 외부사람이 되는데 종로 관내 사람들이 되다보면 서로 얼굴이 익은 인맥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먹고물이 왔다갔다 했을 때 다음에 밝혀질 것 같아서 그런 데에다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의심을 안해 볼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승인등을 짓는다, 어디 짓는 데는 이 계약에 단가를 넣어가지고 현실적인 걸로 해서 계약을 하라는 그런 얘깁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지금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또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 재무국장이 구청에 관련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 중에서 잡종재산만 재무국장이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의 경우 기타 공공용재산의 경우는 재산관리자가 각각 다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용재산의 경우는 건설국장이 관리자고, 공공용 청사의 경우는 총무국장이 관리자고, 저희는 잡종재산만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있으시기 바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설품셈에서 토목품셈의 기초가 되는 정도는 재무국장이 다 알고 시가조사까지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의 편성 기준은 정부에서 표시된 표준품셈표에서 개략 설계에 의한 가격을 표준가격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표준가격을 예산에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산정된 것을 평수에 곱해서 예산에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0만원이라고

한다면 280만원을 저희 종로구의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이나 건설관리과장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단가 표준품셈표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 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고, 또한 가지는 입찰제도의 경우 저희가 어떤 특정업자를 낙찰을 시켜줄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방법의 입찰제도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더 7월 1일부터 입찰제도가 바뀌어서 재무국장인 제가 누구를 특정업자를 낙찰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낙찰이 안됩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기우에서 종로 관내 업자를 기피하고 타지역 업자들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염려하시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계속 현재 제도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입찰하는 어느 누구도 누가 낙찰이 된다는 것을 예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예가를 10개를 입찰보기 일주일 전에 미리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공개된 예가 10개 중에 입찰보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3개를 뽑아서 3개 가격의 평균을 정해서 거기에 88% 직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낙찰자로 정해지기 때문에 공무원의 개입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준품셈에 의하면 정부의 모든 공사가 현재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하나의 뒷받침을 해주는 걸로밖에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안을 내면 만약에 우리가 승인1동청사든 어느 청사 하나를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 중에도 건축을 잘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 직접 짓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財務局長 金誠泰** 방금 보고드렸듯이 입찰방법이 10개 예가를 내걸어 놓고 그중에 3개를 뽑아서 할 수 있는 그 제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입찰방법이 그러니까 재무국장이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모든 공사가 표준가에 보면 비싸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샘플로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은 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입찰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의 혈세를 좀 절감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

입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財務局長 金誠泰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저희 구의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과 또 부실공사 방지, 아주 적정한 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제시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가로 설계를 해서 아주 훌륭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는 방법은 일정한 제도권 하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실재 어느 누가 정말 싼값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도입을 못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다만 앞으로 각종 공사가 하자가 안나도록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관 등 저희 관련공무원에게 저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염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세요? 많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沈載得委員**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沈載得委員** 沈載得委員입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충발언을 할게요. 계약을 재무국에서 하시죠? 그러면 하자보수 같은 것은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소관 국에서 합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재산 관리부서별로 관리를 합니다. 하자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경우는 그것이 공공용의 건물인 경우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총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沈載得委員** 그런 것은 아는데 관리는 아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자기간이 2년이고 3년이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 하자기간은 그 보수를 요청을 하려면 각 국에서 하는 건지 재무국에서 하는 건지, 계약관이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저희는 하자 발생 여부를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자 발생 여부를 결정해서 하자보수 명령을 하도록 요청을 하면 저희가 계약관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하자보수 시공을 하도록 시공명령을 합니다. 시공명령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沈載得委員 그러면 삼청동을 洪起瑞委員이 얘기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부실공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감사를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하자보수를 해달라는 연락을 취한 바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삼청동의 경우 저도 위원님을 통해서 균열이 잦다든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삼청동에도 두어번 가 봤습니다마는 직접 그렇게 세밀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그것은 저는 못 보고 지나갔습니다마는 아직도 충무국에서 삼청동에 하자가 발생해서 이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보수요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沈載得委員 그 문제있네. 확실히 없죠?

○財務局長 金誠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沈載得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수의계약이 공사하고 구매하고 물품 구입하고 다르죠? 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이 공사는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공사는 5,000만원 이하로 물품은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沈載得委員 이것을 말이지, 아까도 우리 洪起瑞 同僚 委員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은 우리 종로구의 주민으로 하기가 힘들겠지만 수의계약은 각 동에서도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등등 많이 있고 또 우리 재무국에서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종로주민으로 직종별로 골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財務局長 金誠泰 지금 수의계약은 종로구민을 시공케 해가지고 종로구 전체 이익을 도모하자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실제 현황은 어떠냐면 5,000만원에서 이하 공사도 대개 100여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의 경우. 그래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지을 수 있는 경우는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의 공정이라든가 또는 무슨 면허를 수반해야만 하는 공정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공사의 경우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공개로 다 돌아갑니다. 저희 구청에서 수의계약 대상에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의계약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곤란하다는 문

제가 있고 다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 의도하시는 대로 저희 종로구민이 수의 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沈載得委員 제가 알기에는 지금 국장님이 나 보다는 더 잘 아실텐데 그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에서는 더 그렇고. 각 議員들이 감사를 가보니까 전부다 영등포 그쪽 사람들을 다 쓰더라고. 이런 무슨 웬스공사 같은 것은 우리 관내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데 다른 먼 데 사람들을 다 쓰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계약계에서도 지금 아마 1,000만원 전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전부 외부사람의 전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품셈을 받아서 계약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전부 외부사람들을 쓰더라고.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 지방자치정착되니까 우리 종로구 구민들 종로구 사람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시라고. 그리고 종로구민들도 면허가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면허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쓰시라고.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알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네. 朴鍾植委員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동사무소에 에어컨이 9대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에어컨 9개 동은 청운동, 부암동, 평창동, 교남동, 종로 1, 2가동, 이화동, 혜화동, 창신3동, 승인2동 이렇게 9개 동인데 이것은 에어컨디셔너 냉난방기 겸용 이것들을 전부다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朴鍾植委員 9개 동이면 종로5·6가동은 안들어갑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에어컨디셔너는 종로5·6가동이 되어 있는데 냉난방기 겸용의 경우는 5·6가동에는 없습니다. 에어컨만 되어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여기에 겸용에는 5·6가동은 안들어있다는 애갑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그렇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러면 되었고, 우리 충무파에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질의했고, 그리고 동 직원들이 세수증대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財務局長 金誠泰** 財務局長 金誠泰입니다. 동직원 세수증대 활동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동직원들이 세수증대 활동에 기여하는 것은 저희 시·구세의 경우는 고지서 전달, 체납독촉장, 징수 독려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기타 동직원들은 상시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유재산, 사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의 경우 재산을 무단 점용하거나 저희가 임대해준 조건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여부 등을 관찰하면서 간접적인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朴鍾植委員** 그게 출장비 여비식입니까? 수당입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수당입니다.

○**朴鍾植委員** 수당으로 4,000만원 돈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동에 한 달에 8만원씩 나가는 지급이 또 있지 않아요?

○**財務局長 金誠泰** 그것은 세무분야 종사자인 세무 지방공무원의 수당입니다.

○**朴鍾植委員** 또 359페이지에 재료비에 가서 부과, 세무관리과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임시고용 인부임 4,32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더블(double)된 것이 아닙니까? 재료비라 해가지고 인건비로 약 5,300만원 잡혀있는데 아까 보고한 보고내용을 보면 여기에 임시고용 인부임이라고 해서 4,320만원 잡혀있는데 이런 것은 내용은 하나인데 예산만 여러 군데……

○**財務局長 金誠泰** 財務局長 金誠泰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재료비라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는 뭐냐면 여기 5,300만원 이것은 부과, 세무1과 일용인부임의 비용이고 이 사람들은 어떤 업무를 하나면 저희가 세입을 잡거나 또 감액을 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수조정 보조업무입니다. 컴퓨터에 입력한다든지 이런 보조인부를 쓰기 위한 예산이고 아까 제가 4,320만원이라고 한 것은 재무과 재료비 기타 인부임입니다.

○**朴鍾植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위원 있음)

네. **洪承台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承台委員** 洪承台委員입니다. 재무국에서는 모든 계약, 토지 매입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종로

구 모든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재무국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95년 이전부터 여러 가지 불용액이 넘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는 물론 각 부서에서 잘못 배정을 해서 재무국으로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면 복지시설 같은 토지 매입 자체도 매년 20억씩 불용액으로 넘어왔고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일단은 어느 지역 A라는 지역이라고 하면 미리 어느 곳에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매입 장소를 심도있게 결정을 안하고 어디다 하고 부서에서 시민국이면 시민국에서 재무국으로 내려와가지고 예산편성만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매매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2년 내지 1년을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도도 51억 8,000만원인데 물론 그중에는 구민회관 토지 매입으로 3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1억 8,000만원 자체도 다 이렇게 불용액으로 안넘어온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또 우리 간접시설자본인 도로, 보도블럭을 종로구 전체에 쓰는 데 4억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또 모든 도로시설 간접자본이 '95년에는 111억 얼마 정도되는데 '96년에는 50%가 감소된 50억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면을 봐서 이번에 모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재무국이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참여하시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심도있게 해서 아무리 부서에서 내려와서 신청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심도있게 강력하게 해서 매번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것을 빼가지고 꼭 필요한 데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財務局長 金誠泰입니다. **洪承台委員**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예산의 기본원칙이 당해년도 세입으로 당해년도 세출을 하고 세출예산에 잡힌 예산은 100% 당해년도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토지 매입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고루 공히 골고루 분포되게 주민에게 시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책정할 당시에 기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한다지만 실제로는 그것 외에도 어떤 특정지

역에 편중되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해당 매입 대상토지를 확정지어 놓지 못하고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하고 실제 요즘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 감정가와 시가의 차이로 인해서 그 매입이 성사가 안 되고 또 성사가 되는 토지는 실제로 거의가 적 정부지가 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부터는 좀더 조기에 대상토지를 물색해서 빠른 시일내에 타협을 짓고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재무국장이 해당 사업부서에 촉구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위원 있음)

네. 丁昌熙委員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丁昌熙委員입니다. 351쪽에 '지방세정연구' 월간지가 10만원씩 1년에 7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월 구독료가 1부당 얼마씩인데 10만원이면 연납으로 해서 할인된 가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財務局長 金誠泰입니다. 丁昌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구입비는 '지방세정연구'라는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그게 재무국장을 포함한 재무국, 세무관련과하고 청장실, 부청장실 해서 전부 7부를 저희가 년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년 구독료가 10만원입니다.

○丁昌熙委員 월 얼마입니까? 1부에. 한달에 1만원짜리인데 년 구독을 하게 되면 10만원이 된다든지, 예를 들어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여기 구독료로 해서 매달 집행하는 것하고 년 구독료가 집행되는 것하고 할인가격의 혜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년 구독료가 나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 보고 다른 월 잡지나 그런 것을 구독할 적에도 년 구독료로 주도해서 이렇게 지속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財務局長 金誠泰입니다. 丁昌熙委員님! 좋은 의견을 해주셨는데 기타 다른 도서에 대해서도 물론 년간 구독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연구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丁昌熙委員 예. 그리고 361쪽에 민원상담관 부

분이 있습니다. 맨위쪽에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임시고용직이죠?

○稅務管理課長 鄭泰武 임시사용직입니다.

○丁昌熙委員 다른 타구에서는 의료보험 시혜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안되고 있죠? 타구의 것을 좀 분석을 해서 사기양양을 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른 예산에서 좀 어떻게 하더라도 형평에 맞는 그런 처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財務局長 金誠泰입니다. 委員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원상담관의 경우는 대부분 과거에 해당분야에 다년간 경력이 있는 퇴직자들이 저희 공무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주 염가에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사실상 일용직도 아니고 그야말로 위치가 아주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법적으로 직장의료보험 대상자가 된 다든지 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데 타구에서 만약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구의 도입 근거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리고 365쪽에 보면 25인치 TV로 전부 규격화된 보급이거든요. 단가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용도로 봐서 어느 부서는 25인치 미만 규격이라도 가능한 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20인치 정도로 해서 조정해서 쥐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데도 있을텐데 이런 사무실 평수라든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꼭 획일적으로 25인치를 일괄적으로 보급할 것이 아니라 20인치 정도로 축소시켜서 보급이 가능한 실과는 그렇게 조정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財務局長 金誠泰입니다. 委員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상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 내용에 보다시피 텔레비전이 전부다 6대가 구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나는 외국어 강좌 개설용이고, 하나는 청부대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넓은 청부대기실에 배치할 것이고, 나머지는 기획예산과, 여권과, 교통행정과에 배치하는 것인데 기획예산과도 그렇지만 여권과와 교통행정과 것은 시민 청취용으로 그렇게 배치를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면 최대한으로 큰 것을 사야 됩니다. 저희가 예정하기는 25인치를 예정하고 있지만 지금 전자부품들이 특별소비세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다운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의 실정에 맞춰서 예산이 허용하면 25인치 이상도 여권과나 교통행정과, 저희 총무과의 교육용 이런 것은 예산이 허용하면 28인치, 29인치로 사줄 계획입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TV하고 VTR을 별개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건소에서는 25인치 TV하고 VTR을 겸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5만원을 하더라도 25인치 TV가. 그래서 이걸 별개로 하게 되면은 50만원하고 60만원 해서 110만원인데 겸용으로 하게 되면은 75만원으로 35만원 정도가 한대당 예산절감이 됩니다. 똑같은 TV하고 VTR을 같이 구입해야 되는 실·과는 겸용으로 비치를 해주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수물품에 무조건 돼있다고 해서 그냥 별개로 생각해서 구입할 것이 아니라 겸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局長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財務局長 金誠泰** 그 부분에 대해서는 丁昌熙委員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용도에 따라서 TV와 녹화기가 동시 내장돼 있는 그런 기기가 필요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분리돼서 연결이 돼야만 운영하기가 편리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동시 내장돼 있는 것이 비치 가능한 부서는 동시 내장된 것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리고 367쪽에도 에어컨디셔너하고 난방기가 분리돼서 구입하게 돼있는데 여차피 실·과에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겸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하면은 굉장히 염가로 예산자체가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課에 협의를 해서 겸용이 필요해서 조정이 되는 실·과는 난방기나 온방기를 별개로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타당성 있다고 의견이 일치하는 곳은 겸용으로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예. 알겠습니다.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냉난방이 동시에 필요한 부서의 난방기 구입 때는 난방까지도 동시에 구매할 수 있

도록 좀더 한단계 높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리고 조금 아까 洪承台委員님께서도 지적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을 개별동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원초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만 원하는 지역에 안배를 해서 그 지역에 가시적으로 그것이 설치되는 양 부풀은 희망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집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불용액이 될 것이 거의 7, 80% 예견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포괄비로 해서 어린이집은 몇 개소. 돈은 써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 3군데 정도 잡혀있는 예산 가운데 한 두군데 정도만 포괄비로 잡아놓고 한군데 정도 설치를 한 곳은 다른 긴요한 예산으로 돌려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포괄비로 도저히 운영상, 규정상 할 수 없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시설비의 경우 포괄비는 예산이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부담동이면 부담동, 이렇게 목적지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업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委員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洪承台委員님이나 丁昌熙委員님이 걱정하셨듯이 저희가 '95년도에 사업성 토지매입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委員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財務局長이 노력할 것을 委員님들께 약속드립니다.

○**丁昌熙委員**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토지매입비, 이런 식으로 묶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겁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리고 381쪽에 보면은 결산검사위원이 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운영상 3명으로 돼있는데 5명이면 2명이 초과돼서 책정된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이 결산검사위원은 5인 이하로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 3명이 운영한다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5인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丁昌熙委員** 아니 5인 이하로 돼 있는데, 우리

구의회 委員수의 정수로 봐서는 3인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규정상 5인 이하로는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委員이 30인이 초과가 안되기 때문에 21인인 상태에서는 1/3인가 1/6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3명 이상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명 이상도 잡아놔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局長님?

○**財務局長 金誠泰** 이것은 丁委員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5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區의 경우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3인만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상 3명만 잡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대 한도가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으로 되어 있는 현재 규정이 안바뀐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5인까지 최대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3인으로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丁昌熙委員** 그리고 朴文培委員이 먼저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의 여비 항목에는 8명이 15일 동안 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79쪽에는 區의 8명이 20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급량비가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20일 중에서 5일은 여비가 해당이 안되는 가까운 지역에 가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15일만 잡힌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이것은 예산편성의 한도 때문에 규정한 것인데요. 급량비는 15일 이상 계산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여비는 예를 들면 며칠 이상 계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액시엄까지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96년도 예산편성에 각각 공히 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丁昌熙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다른 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安哲柱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哲柱委員** 지난번 행정 감사시에 局長님께 우리 종로구의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과 세입증대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길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59쪽에 보면은 급량비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賦課課에 정원이 43명인데 여기는 44명으로 나와 있는데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稅務管理課에 체납 경위 특별활동으로 780만원, 賦課課에 1,320만원이죠? 이 금액이 지금 급량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95년도 행정 감사시에 本 委員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방세 특별감사 급량비를 財務課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감사대로 1,538만원에 대한 급량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또 1,667만원이나 여비로 財務課에서 감사실로 지출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세입징수가 잘 안되고 세원발굴이 잘 안되는 이유가 財務課에 편성된 급량비라든지 여비들이 監査課로 지출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원발굴도 안되고 세입징수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監査室에도 급량비가 있는데 왜 財務課의 급량비가 거기에 지출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金誠泰** 작년에 監査室으로 급량비 지급이 나간 이유는 인천 등록세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비리 감사에 동원이 돼서 그 예산이 감사 부서에서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무직 공무원이 일부는 저희가 수검을 하고 일부는 다시 또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포괄비에서 집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財務局 예산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남는 돈 전부 끌어다 썼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회 일부 委員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작년의 경우는 거의 財務局 전 직원뿐 아니라 감사직, 또 과거에 세무 업무에 경험이 있던 일반 행정직 공무원까지 착출이 돼서 수검도 하고 감사를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財務局 예산하고 급량비까지 다 집행이 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급량비나 여비를 안준다고 해서 시세, 구세징수나 체납, 시구세 징수활동에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여비나 급량비를 안준다면은 사기에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委員님들에게 지금 저희 財務局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시구세 징수에서 저희 종로구가 1위를 안 뺏기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서는 어떻게

변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채납시세징수, 일반시세징수가 상위권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安哲柱委員** 예산 편성의 기준을 본다면은 정원을 기준해서 이미 각課에 급량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그러면은 급량비로 책정된 금액에 대한 것은 직원들한테 돌려주던가, 만약 여기에 나와 있는 財務課의 급량비 중에서 監査室로 지출된 1,538만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급량비가 없어도課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 아닙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359쪽에 들어있는 5,000원×44명×60일 하고 5,000원×26명×60일로 돼 있는 급량비는 이것은 거의 보수적 성격입니다.

○**安哲柱委員** 그러니까 보수적 성격의 급량비를 왜 지방세 비리관계 때문에 착출된 사람들에게까지 그 돈을 별도로 계산을 해서 지출이 되는지……

○**財務局長 金誠泰** 포괄비에서 물론 썼구요, 모라자는 돈을 여기 저기에서 다 끌어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安哲柱委員**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재수가 있는 돈을 왜 監査室에다가 급량비를 줍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작년의 경우 등록세 비리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처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安哲柱委員**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지 왜 財務課에 지급해야 될 직원들의 급량비를 監査室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財務局長 金誠泰** 그 얘기가 아니고요, 委員님이 잘못 들으셨는데 저희 직원이 監査室 주관으로 파견나가서 세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稅務管理課하고 賦課課 직원이 그 쪽으로 가면은 거기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監査室에서 우리 돈을 가져다가 총괄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달을 한 것이지 결국 돈은 저희가 저희 직원 줄 돈을 監査室에서 착출돼 나가서 監査室 손을 통해서 준 것 뿐입니다.

○**安哲柱委員** 결과적으로 財務課 직원들한테 나가야 될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예. 그겁니다.

○**安哲柱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죠?

○**財務局長 金誠泰** 현재 받고 있습니다.

○**安哲柱委員** 지난번 監査室長 이야기로는 우리가 감사를 받을 적에 감사를 수받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출된 돈은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현재 저희 財務課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監査室에서 감사관들한테 음료대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하는 것으로 다소 지출이 되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安哲柱委員** 그러면 財務局 안에서 감사 수발을 돕기 위해서 지출된 경비는 이제까지는 없었군요?

○**財務局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安哲柱委員** 그러면 내년에 이 문제가 경비가 지출된 일이 있을 때에는 財務局長님이 책임지셔야 될 사항이죠?

○**財務局長 金誠泰** 네. 그렇습니다.

○**安哲柱委員**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가 있죠? 賦課課에 3,240만원, 稅務管理課에 2,160만원, 그리고 379페이지에 보면은 일시고용인부 4,320만원이 재료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賦課課나 稅務管理課가 인원들이 더 이상 책상에 앉아서 사무를 볼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무슨 호텔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여관을 이용합니까? 마땅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꼭 이런 인원이 필요하나요? 작은 돈들이 아닌데요.

○**財務局長 金誠泰** 359쪽의 경우는 賦課課나 稅務管理課의 일용인부임입니다. 현재 이만한 인원을 실제 저희가 사역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課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규직 외에 임시직까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상태이고 그 사람들이 빠지면 그만큼 숫자가 빌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79쪽에 있는 재료비 기타의 경우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저희가 필요한 기간만큼 계속해서 임시 사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별히 인원수가 더 늘어날 것은 없습니다.

○**安哲柱委員** 여기에 인원 통계대로 본다면 작은 인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꼭 이렇게 많은 인원들까지 동원해서 해야 된다면 진짜 직제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시 고용인부만 하더라도 28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43명인데 임시 고용원들이 너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용면으로 봤을 때에 채납도 제대로 못 견어들이면서 무슨 인원들은 이렇게 많습니까?

○財務課長 司空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의 재료비는 일시 고용인부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365일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75일, 90일 그리고 인원도 8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 2명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한꺼번에 26명을 1년 동안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일수하고 인원수하고 보시면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安哲柱委員 예산 심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95년도의 이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다른 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鄭泰淳委員!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淳委員 불용액에 대해서 局長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委員들이 지역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 때문에 구입을 못해서 어떤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을 시기적으로 여건이 충족되어서 할 경우에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사한 예산을 가지고 당해 년도에 그 용도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사업성 예산 시설비는 시설비 자체 내에서는 소위 유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는 법률 지식으로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임의로 어느 사업 목적에 토지매입비를 집행할 못했으니까 그것을 타산 목적으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이는 집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鄭泰淳委員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종로구 관내에 개인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현 시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유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이 안됐을 경우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그때가 아니면 매입을 못한다, 그러면은 유사한 물건에 대해서 또는 구입을 못해서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을 똑같은 것으로 유용할 수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공공 보수경비 등은 지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의 경우 시설비 내에서 유용이 가능한데 그 유용 가능한 부분은 의회에서 A, B, C로 정해졌으면 그 A, B, C를 못 쓸 경우 D로 활용하려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은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 얘기입니다.

○鄭泰淳委員 부지끼리 매입을 해도 마찬가지로입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니까 A동을 살 것으로 C동을 살 수 있느냐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鄭泰淳委員 예.

○財務局長 金誠泰 그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鄭泰淳委員 의회의 동의를 있으면은 가능합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그러니까 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됩니다.

○鄭泰淳委員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신문로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局長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147평에 대한 물건이 지방도로 관리청에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토개공으로 넘겼습니다. 토개공으로 넘긴 그 물건 자체가 지금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2월 30일부로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서 2월말에 공매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승인2동과 창신2동의 복지판 부지매입비가 금년도에 불용액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1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신문로에 있는 게 공시지가로 한 10억 정도 산출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있으면 가능합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그것은 의회의 동의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집행부의 의사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라”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구청의 의사가 결정이 되고 구청에서 결정된 의사를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있을 때만 그와 같은 변형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의사결정이 되려고 하면은 전제조건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재정계획에 반영된 우선 순위가 타 사업보다는 선순위에 가까워야만 되는 그런 전제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런 점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鄭泰淳委員 후자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그러한 우선순위 책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저희 위원들이 현지에서 지역 일을 보다 보면 그런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민첩하게 대응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同僚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鄭委員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을 다니시면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財務局長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을 도와드리는 것도 사실상 일정한 제도권 내의 범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못보여 드리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의 어려운 점들을 財務局長을 비롯한 재무국 직원들 나아가서는 종로구 직원들이 많이 보살피고 또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千相旭委員! 질의하세요.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지적과 593P. 지적과를 아직 검토하지 않았는데 연구개발비가 '95년도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2억 931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도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니까?

○地籍課長 徐熙錫 지적도 정비사업은 저희 종로구청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계획하에 내무부 지시가 있었고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4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또한 금년 보다 많이 잡혀 있을 뿐이지 후년에도 계속해서 2000년까지 지적도를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1910년

도에 일본군에 의해서 지적도가 작성될 때 수치가 돼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도면 즉 종이 위에다가 그려넣는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 지적도가 도각이 설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 빨간선으로 도면과 도면을 연결짓는 부분이 도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A도면에서 B도면하고 접합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도면 신축이 생기면서 세부측량 당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만 오랜 시일이 흐르면서 또 지적도가 낡아서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적도를 전산화시키는 과정에서는 꼭지점 즉 꼭선마다 X, Y의 좌표를 산출해 가지고 전산화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필지가 A도면 하고 B도면 하고 연관이 돼서 하나의 필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도각의 차이에서 좌표선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기회에 맞춰서 또 실제 가지고 있는 면적하고 현안하고 전부 다 일제히 측량을 합니다. 접한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처리를 하고 꼭 마무리 지어서 꼭 맞게 만들어 가지고 전산화하기 위한 내부작업 앞으로 이것이 전산화가 완료되게 되면 지금 현재 토지대장은 전국에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 제주도 토지대장을 저희 구청에서, 지방에 대한 지적도는 다룰 수가 없는 절름발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에는 전국 지적도가 온라인이 돼서 하시라도 지방에 있는 지적도를 저희 區廳에서 아니면 저희 구청의 지적도를 지방에서 다룰 수 있는 시대가 올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예비단계로써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설명드립니다.

○千相旭委員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2억 900만원 비용을 우리 구청 직원이 사용합니까? 용역을 합니까?

○地籍課長 徐熙錫 이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국가가 지정한 반관 반민 단체인 지적공사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지적공사에서 그럼 지적도를 전산화하기 위한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8매에 대한 것이라 했는데 1매 작성하는데 161만 2,600 이렇게 많이 듭니까?

○地籍課長 徐熙錫 이 작업을 하려면 도면만 만

드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의 도각이 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측량사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조원도 있어야 되고 또 면적을 다시 산출해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비용은 사실상 국영기업이니까 마지못해서 하지 일반 개인한테 맡기면 장당 500만원 쥘도 못할 겁니다.

○千相旭委員 지적협회에다가 위임한다 이 말씀이지요?

○地籍課長 徐熙錫 네.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지가, 소위 말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심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작년에 3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千相旭委員 3만원이 5만원으로 된건데…… 288만원에서 630만원으로 되었습니까? 산출근거 맞아요?

○財務局長 金誠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千相旭委員 연 12회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각 동단위에서 토지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區廳에서는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동단위 감사를 나가보니까 동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감정평가위원회에다가 해서 단가를 낮추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수용합니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토지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평당 1,000만원이라고 하면 800만원으로 조정해서 해달라고 하면 동회에서는 그대로 수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덩어리를 區廳에서 조정을 하는지 도대체……

○財務局長 金誠泰 지금 공시지가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제도는 전 국토를 정부에서 정한 기준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1년에 일정필지의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그걸 감정을 해서 그 감정한 가격을 매년초에 발표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지를 대상으로 저희 관내 전체 토지를 개별지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라는 것은 표준지와 각 토지의 개별지가 2개 합친걸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지가 결정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자기

관할 등에 지금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지를 상대로 해서 표준지 상대 1지역은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런 토지의 특성 32개를 비교해가지고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온 것을 저희 동에서 일단 심사를 합니다. 동 자체에서 그런 연후에 區廳에 들어와서 아까 물으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개별심사를 하기 전에 토지평가사의 약식 검증이란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약식검증을 받으면 최종 결정하는 것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종로구 전체 필지에 대한 것을 한 건 한 건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委員님이 말씀하시기에 큰 필지의 토지주가 동직원이나 동심사위원을 찾아다니면 가격이 낮아지고 또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건 설사 거기에서 낮은 가격으로 조정해왔다 하더라도 표준지를 일일이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대부분 바로 잡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당해년도뿐 아니라 그 다음해 년도에도 이의신청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격분에 작년도가격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그런 작업으로 공시지가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동직원들이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하는데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지가감정사 있잖아요? 감정사 사무소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낮추더라 이 말씀이예요. 동직원이 평가한 이하로 낮춰서 그런 절차를 밟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개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표준지와 그 개별지가, 결정지와와 관계를 규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표준지하고 같은 조건이나 아니면 그 특성을 비교하는 게 32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길이나 작은 길이나? 큰 길도 한면이나 두면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런 것도 32가지 토지특성을 표준지와 개별지를 대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심사과정에서 일일이 다 노출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특성조사에서 심사가 되어 가지고 1개 지구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설사 어떤 특정지역의 지가를 낮추려고 동에서 로비를 했다가 심한 경우 그런 부실문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심사과정에서 노출이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 하면 개별지가가 어느 항목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집 옆집 연달아 똑같이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인의 특정토지만 가격을 낮춘다고 하면 그 동네가 다 낮춰지지 않는 한 그쪽만 낮아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그리고 개별지가 조사업무 합동조사활동비란 것도 있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활동비 이런 거 과거에는 없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활동은 우리 공무원들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활동을 말합니까? 이게 뭐니까?

○財務局長 金誠泰 그건 공무원의 활동입니다. 평가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출장조사는 하지 않고 평가위원 중의 한 사람이 공증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 공증원 한 사람만 동평가한 것을 자문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직업이 토지평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약식검증할 때도 현장을 안나가 보고 검증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를 들어 종로 1, 2가 담당이면 어느 땅의 높낮이가 어떻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평가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운영을 局長님이나 課長님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동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복덕방하는 분들이나 부동산하는 분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대충 그런데 책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주변을 그 값으로 때려버린다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그대로 당한다고. 일반인들은 우리 세금이 올랐구나 하는데 많이 가진 사람들은 피해나가더라구.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받아 가지고 그걸 증거로 이의신청을 하니까 동이나 구청에서는 수용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제도 자체가 있는 자에게는 싸게 해주고 있는 자의 말을 듣는 제도야. 없는 자는 그대로 때려버리고. 그러한 허점을 보여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이 돈을 들여 가지고 평가위원회도 구

성하고 또 공무원들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하는데 아무리 감정평가사 감정요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법에 의해서 합리적인 감정을 하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조정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 나름대로, 동 나름대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하는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더라구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진 자가 더 갖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財務局長 金誠泰 실제로 지금 제도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못하도록 모든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지가를 결정하는 결정 시기가 짧은 기간 동안 저희 관내 6만여 필지를 이 시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동지역은 동일 가격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까요? 거의 비슷하게 막 때려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재무국의 경우는 제가 종로로 온 이후로는 이의신청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20필지를 심사했지만 한필지 한필지 전부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96년도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千相旭委員님이 지적하셨듯이 불리하게 파다 인상되거나 또 가진 자만 혜택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정확한 지가 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감사합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재무국 소관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예산의 계수조정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오늘 참석하신 委員님들은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까지 이 자리에 參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고 散會를 선포합니다.

(12時 20分 散會)

○出席委員 11人

玄壽漢	洪起瑞	安哲柱
吳錦南	千相旭	沈載得
鄭泰淳	洪承台	丁昌熙

朴 鍾 植 朴 文 培

○出席專門委員

蔣 昭 秀

○出席 關係公務員

財務局長 金 誠 泰

財務課長 司 空 坤

稅務管理課長 鄭 泰 武

賦課課長 康 聖 喆

地籍課長 徐 熙 錫